

「파견 교환학생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0. 6. 8. 개정 판 (시행 2020. 6. 1.) → 2016. 7. 27. 개정 판 (시행 2016. 7. 27.)

바뀜 10 · 신설 0 · 삭제 3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91/compare?from=999&to=681>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6:40:50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교비)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자비) 2.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인 자 4. 삭제 <개정 2016-07-27>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제2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교비)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자비) 2. 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인 자 4. <u>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침례증서와 과목추천서 제출)</u><개정 2016-07-27>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제2의2조 (선발조건) 1. <u>교환학생은 해당국가에서 성실히 예배에 참석해야하며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u> 2. <u>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u> 3. <u>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개정 2016-07-27></u>
제2조의2(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해당국가에서 성실히 예배에 참석해야하며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3. <u>삭제</u> <개정 2016-07-27>	제3조(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해당국가에서 성실히 예배에 참석해야하며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3. <u>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개정 2016-07-27></u>
제3조(등록금 납부)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제6조(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생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생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사무관장) 교환학생의 선정은 국제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서류전형(학과성적40%, 어학성적 30%)과 면접전형(30%)으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협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제7조(사무관장) 교환학생의 선정은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서류전형(학과성적40%, 어학성적 30%)과 면접전형(30%)으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협이 추천할 수 있다.
제2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2. 전(전) 학년 평균점 3.2 이상인 자 3. 신HSK 4급(180점)이상인 자 4.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제2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2. 전(전) 학년 평균점 3.2 이상인 자 3. 신HSK 4급(180점)이상인 자 4.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제2의2조 (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생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2조의2(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생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삭제>
제6조(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제6조(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관장) 교환학생의 선정은 국제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서류전형(학과성적40%, 어학성적 30%)과 면접전형(30%)으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협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제10조(사무관장) 교환학생의 선정은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서류전형(학과성적40%, 어학성적 30%)과 면접전형(30%)으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협이 추천할 수 있다.
제2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2. 전(전) 학년 평균점 3.2 이상인 자 3. JLPT 2급 또는 JPT 580점 이상인 자 4.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5. 삭제 <개정 2016-07-27>	제2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2. 전(전) 학년 평균점 3.2 이상인 자 3. JLPT 2급 또는 JPT 580점 이상인 자 4.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5.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개정 2016-07-27> 제2의2조 (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현 행	개 정 안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2조의2(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삭 제>
제6조(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제6조(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관장) 교환학생의 선정은 국제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서류전형(학과성적40%, 어학성적 30%)과 면접전형(30%)으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협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06-08>	제10조(사무관장) 교환학생의 선정은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서류전형(학과성적40%, 어학성적 30%)과 면접전형(30%)으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협이 추천할 수 있다. 영어권 교환학생 선발 내규 ☐ 면접위원(사무처장(위원장), 인문사회대학장, 대외협력부장, 교무부장, 영미어문학부장 ☐ 반영비율(학과성적 40%, 어학성적 30%, 면접 30%) (1) 학교성적(4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14점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평균평점 반영점수 평균평점 반영점수 3.2~3.29 14 3.9~3.99 28 3.3~3.39 16 4.0~4.09 30 3.4~3.49 18 4.1~4.19 32 3.5~3.59 20 4.2~4.29 34 3.6~3.69 22

현행	개정안
	<u>4.3~4.39</u> <u>36</u> <u>3.7~3.79</u> <u>24</u> <u>4.4~4.49</u> <u>38</u> <u>3.8~3.89</u> <u>26</u> <u>4.5</u> <u>40</u> (2) 어학성적(30%) <u>iBT</u> <u>PBT</u> 반영점수 <u>113이상</u> <u>647이상</u> <u>30</u> <u>111-112</u> <u>640-643</u> <u>29</u> <u>110</u> <u>637</u> <u>28</u> <u>109</u> <u>630-633</u> <u>27</u> <u>106-108</u> <u>623-627</u> <u>26</u> <u>105</u> <u>617-620</u> <u>25</u> <u>103-104</u> <u>613</u> <u>24</u> <u>101-102</u> <u>607-610</u> <u>23</u> <u>100</u> <u>600-603</u> <u>22</u> <u>98-99</u> <u>597</u> <u>21</u> <u>96-97</u> <u>590-593</u> <u>20</u> <u>94-95</u>

현행	개정안
	<u>587</u> <u>19</u> <u>92-93</u> <u>580-583</u> <u>18</u> <u>90-91</u> <u>577</u> <u>17</u> <u>88-89</u> <u>570-573</u> <u>16</u> <u>86-87</u> <u>567</u> <u>15</u> <u>84-85</u> <u>563</u> <u>14</u> <u>83</u> <u>557-560</u> <u>13</u> <u>81-82</u> <u>553</u> <u>12</u> <u>80</u> <u>550</u> <u>11</u> <u>(3) 면접(30%)</u> <u>1) 평가영역</u> <u>가.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20점</u> <u>나. 교환학생 학업계획서, 어학능력 평가 10점</u> <u>* 30점*5(평가위원)=150÷5 =30점(반영점수)</u> <u>등급 구성</u> <u>등급</u> <u>평가</u> <u>등급</u> <u>평가</u> <u>A+</u> <u>매우 훌륭함</u> <u>C</u> <u>비교적 보통임</u> <u>A</u> <u>훌륭함</u> <u>D+</u> <u>비교적 결여됨</u> <u>B+</u> <u>잘함</u> <u>D</u>

현행	개정안
	결여됨 B 비교적 잘함 E+ 매우 결여됨 C+ 보통임 E 결여정도 심함 중어권 교환학생 선발 내규 ≡ 면접위원(교무처장(위원장), 인문사회대학장, 대외협력부장, 교무부장, 중국어학과장 ≡ 반영비율(학교성적 40%, 어학성적 30%, 면접 30%) (1) 학교성적(4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14점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평균평점 반영점수 평균평점 반영점수 3.2~3.29 14 3.9~3.99 28 3.3~3.39 16 4.0~4.09 30 3.4~3.49 18 4.1~4.19 32 3.5~3.59 20 4.2~4.29 34 3.6~3.69 22 4.3~4.39 36 3.7~3.79 24 4.4~4.49 38 3.8~3.89 26 4.5 40 (2) 어학성적(30%)

현행	개정안
	중국어 어학시험 실제 점수 HSK(한어수평고사) 6급 (210점) 6급 (180점) 5급 (195점) 4급 (210점) 4급 (180점) 반영점수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3) 면접(30%) 1) 평가영역 가.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20점 나. 교환학생 학업계획서, 어학능력 평가 10점 * 30점*5(평가위원)=150÷5 =30점(반영점수) 등급구성 등급 평가 등급 평가 A+ 매우 훌륭함 C 비교적 보통임 A 훌륭함 D+ 비교적 결여됨 B+ 잘함 D 결여됨 B 비교적 잘함 E+ 매우 결여됨 C+ 보통임

현행	개정안
	<u>E</u> <u>결여정도 심함</u> <u>일어권 교환학생 선발 내규</u> <u>면접위원(사무처장(위원장), 인문사회대학장, 대외협력부장, 교무부장, 일본어학과장</u> <u>반영비율</u> <u>학교성적 40%, 어학성적 30%, 면접 30%</u> <u>(1) 학교성적(4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14점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u> <u>평균평점</u> <u>반영점수</u> <u>평균평점</u> <u>반영점수</u> <u>3.2~3.29</u> <u>14</u> <u>3.9~3.99</u> <u>28</u> <u>3.3~3.39</u> <u>16</u> <u>4.0~4.09</u> <u>30</u> <u>3.4~3.49</u> <u>18</u> <u>4.1~4.19</u> <u>32</u> <u>3.5~3.59</u> <u>20</u> <u>4.2~4.29</u> <u>34</u> <u>3.6~3.69</u> <u>22</u> <u>4.3~4.39</u> <u>36</u> <u>3.7~3.79</u> <u>24</u> <u>4.4~4.49</u> <u>38</u> <u>3.8~3.89</u> <u>26</u> <u>4.5</u> <u>40</u> <u>(2) 어학성적(30%)</u> <u>일본어 어학시험</u> <u>실제점수</u> <u>JPT</u> <u>750점 이상</u> <u>700점 이상</u> <u>650점 이상</u> <u>580점 이상</u>

현 행	개 정 안
	<u>JLPT</u> <u>1급</u> <u>2</u> <u>2급</u> <u>2</u> <u>반영점수</u> <u>30점</u> <u>20점</u> <u>10점</u> <u>5점</u> <u>(3) 면접(30%)</u> <u>1) 평가영역</u> 가.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20점 나. 교환학생 학업계획서, 어학능력 평가 10점 * 30점*5(평가위원)=150÷5 =30점(반영점수) <u>등급구성</u> <u>등급</u> <u>평가</u> <u>등급</u> <u>평가</u> <u>A+</u> <u>매우 훌륭함</u> <u>C</u> <u>비교적 보통임</u> <u>A</u> <u>훌륭함</u> <u>D+</u> <u>비교적 결여됨</u> <u>B+</u> <u>잘함</u> <u>D</u> <u>결여됨</u> <u>B</u> <u>비교적 잘함</u> <u>E+</u> <u>매우 결여됨</u> <u>C+</u> <u>보통임</u> <u>E</u> <u>결여정도 심함</u>